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43
----------	-------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장제원 · 하영제 · 백종헌
박정하 · 윤두현 · 안병길
박성중 · 강대식 · 양금희
이철규 · 전주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위성 수의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위성정보가 축적되어 위성정보 활용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발사되는 민간의 위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며, 위성정보 중 위성영상 위주로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향후 국내에서 운영하는 위성 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위성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위성

및 인공우주물체 등이 획득·제공하는 정보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더 나아가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산업 태동기에 적극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위성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나 궤적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산업 진흥을 위하여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장관은 관련 종사자의 위성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정보활용교육센터를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관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저장소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된 위성정보 등을 제공·활용하는 경우 보안심사를 하고, 이를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전담기구는 보안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4조).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우주과학기술과 우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2. “위성”이란 관측, 항법 등을 목적으로 지구의 특정 궤도에서 운영되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3. “위성정보”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위성 또는 그 외의 인공우주물체(이하 “위성 등”이라 한다)를 통해 취득한 각 정보의 처리단계별 결과물과 이들을 조합하여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하며, 위성 등을 통해 생성된 모든 정보를 포괄한다.
 - 가. 위성 등의 자세, 궤도 등 상태 정보
 - 나. 위성 등의 관제를 위한 송수신 및 교신 정보
 - 다. 위성 등에 탑재된 장치를 통해 획득한 대기, 해양, 육지 등 지

구관측정보

라. 위성 등에 탑재된 장치를 통해 획득한 우주, 행성 탐사 등 우

주관측정보

마. 위성 등에서 송신하는 항법정보

바. 기타 위성 등을 통해 생성된 모든 정보(다만, 통신 목적으로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식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4. “위성운영”이란 위성 등을 관제하고 정보를 취득, 처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위성정보를 관리하거나 수신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말한다.

6. “위성정보활용산업”이란 위성 등의 운영 및 위성정보의 취득·제공·유통 및 기타 활용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7. “위성정보활용사업자”란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위성정보 생산기관”이란 관리기관을 제외하고 위성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성정보를 수신하거나 국내외기관과의 거래 등을 통해 위성정보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에 관하여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제5조, 제6조는 제외한다)은 제2조제3호마목의 항법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위성정보활용 기반 조성

제5조(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수요·동향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담기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시책, 제24조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위성 등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2.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위한 정보저장소 등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3.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보안, 관리, 제공 및 활용

4. 그 밖에 위성 등의 운영, 위성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성 등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위성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기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위치나 궤적 등에 대해 전담기구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위성개발 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국민생활의 안전 향상을 위한 협력 및 행정응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 재난재해 및 국가안보 상황 발생 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의 활용에 대한 협력 및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 및 행정응원 요청에 따르는 세부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단,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화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정보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리기관, 위성정보 생산기관 및 위성정보활용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교육을 포함한 위성운영의 절차
2. 위성정보의 저장 형태
3. 위성정보의 분류 체계
4. 위성정보의 처리·배포
5. 위성정보의 처리기술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 연구, 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위성정보 및 위성정보활용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인증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기,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

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성정보활용산업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성정보활용산업협회 설립) ① 위성정보활용사업자는 위성정보활용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성정보활용산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정보활용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연구
2.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기술·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3. 위성정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4. 위성정보활용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5.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관련 기술 개발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위성정보활용산업 지원

제13조(위성정보활용산업 진흥시책) ① 정부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의 보급·활용과 관련하여 위성정보활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위성정보의 관리, 공개, 제공, 복제, 판매 등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 적용 방안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 연구개발사업과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4. 기술 연구인력 양성 및 시설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4조(위성정보활용교육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위성정보활용사업자 등 관련 종사자의 위성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성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위성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위성

정보활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성정보활용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항의 위성정보활용 관련 종사자에 대한 위성정보활용교육 및 연수
2. 위성운영 절차 및 안전교육 등 위성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위성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인력 활용방안
2.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3.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시설 개방·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과 위성정보활용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전담기구가 보유하는 우주용 안테나, 위성정보처리시스템 등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시설(이하 “위성정보활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위성정보활용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성정보활용 기반시설의 개방·활용으로 인해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해당 시설이 비밀·보안시설등에 해당하여 개방·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을 개방·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담기구의 장에게 위성정보활용 기반시설의 개방·활용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활용 기반시설의 개방·활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성정보의 제공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위성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수신·보유한 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간행하여 판매·배포하거나 해당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19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위성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5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1조에서 같다)의 장은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20조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은 자 등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위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성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9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로서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1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활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위성 등 활용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
4. 위성 등 활용기술의 해외 현지화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위성정보의 보호

제19조(보안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 및 위성정보 생산기관의 장 등이 위성정보 또는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성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로서 같은 법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를 제공받거나, 활용 또는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위성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간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4조(보안처리업무 지원) 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구는 관리기관 및 위성정보 생산기관이 제19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안처리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자문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비는 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측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위성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위성정보 및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른 공개제한·비공개 위성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성정보 또는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공개제한 및 비공개 위성정보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른 전담기구 및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보안심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위성정보의 유통과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성정보 또는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성정보 또는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한 자
3.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31조(과태료)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성정보”란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성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를 “인공 우주물체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보며, 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